

■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(차아황산소다)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(%)
중국	1. 다음 각 목의 기업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. 진허(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., Ltd.) 나. 진하이(Yantai Jinhai Chemicals Co., Ltd.)	12.87
	2. 마오밍(Guangdi Maoming Chemical Co., Ltd.)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3.97
	3. 그 밖의 공급자	33.97

비고: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